

## 충청북도 부폐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95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월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부폐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폐유발 제도개선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충청북도 부폐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청구권자는 충청북도민과 단체로 하되, 20세 이상의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함(안 제2조)
- 충청북도의 조례·규칙·훈령·지침·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등 부폐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가 청구대상으로 함(안 제3조)
- 제도개선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도록 함(안 제5조)
- 도지사는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)
- 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함(안 제7조)

**3. 의안전문 : 불임**

**4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**

**5. 입법예고 결과 의견 : 의견 없음**

## 충청북도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부패소지가 있는 행정제도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 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개선을 청구하는 부패유발 제도개선 청구 (이하 “제도개선청구”라 한다)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청구권자)** 제도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일 현재 충청북도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도민과 단체로 하되, 20세 이상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며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청구대상)** ① 제도개선청구대상은 충청북도 소관 조례·규칙·훈령·지침·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,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 유발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한다.  
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 
1. 충청북도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 
2. 부패소지가 아닌 단순한 행정편의 사항인 경우  
3.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
4. 기타 제도개선 청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**제4조(청구)** 제도개선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청구하여야 한다.

1. 대표자 및 청구인 인적사항
2. 제도개선 청구사항·청구취지·청구이유
3. 입증자료

**제5조(요건심사 등)** ① 도지사는 제도개선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청북도감사위원회(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도개선 대상여부 등 요건심사에 필요한 자문을 받아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도 소관의 자치법규나 관련제도 해당 여부
  2. 제도개선 청구사항이 부조리 또는 부패유발 요인의 해당 여부
- ③ 위원회는 제도개선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6조(처리)**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사유와 기간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처리결과 통보)** 도지사는 제도개선청구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(별지 제1호서식)

부폐유발 제도개선 청구서				
청 구 인 대 표 자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(전화번호 : )		
청 구 내 용				
충청북도 부폐유발 제도개선 청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.				
청구인대표자		년	월	일
		(서명 또는 날인)		
충청북도지사 귀하				
※ 첨부서류 : 1. 청구인명부(50인 이상 연서) 2. 청구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				

210 mm × 297mm

(인쇄용지 60g/m<sup>2</sup>)

(별지 제2호서식)

(청구인명부의 표지)

## 제도개선 청구인 명부

- 서명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까지
- 서명주민수 : 명

청구인 대표자 (인)

## (별지 제3호서식)

청 구 인 명 부

번호	성 명	주민등록 번 호	주 소	서명또는 날인	서명일자	비 고

## ※ 작성요령

- 번호란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.
- 성명란은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를 기재한다.
- 주소란은 지번까지 기재하며,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한다.
- 서명 또는 날인란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, 인장을 날인한다.
- 서명자가 서명을 취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취소일자를 기재한다.

## 관 계 법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#### 제15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부패방지법

#### 제20조(제도개선의 권고)

-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### □ 부패방지법 시행령

#### 제13조(제도개선 권고의 절차)

-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